

과적차량 운행금지 협조 및 단속안내

▷ 단속근거 운행제한 → 도로법 제77조

▷ 단속대상 -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
 - 높이 4.0m, 길이 16.7m, 폭2.5m 초과차량

▷ 단속방법 삼척시 관내 전지역, **7월중 불시 단속**

◆ 단속기간 : 2021.07.07. ~ 07.31

- 주말 합동단속 : 불시 2회

- 평일 합동단속 : 불시 2회

◆ 과적은 **경제적으로 큰 손해**입니다.

-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입니다.

삼척시에서는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 및 교량등의 유지·보수를 위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제한 (과적)차량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

삼척시청 건설과

☎033-570-3498